

# 11월 청렴 및 공직기강확립

(연말 대비 공직기강확립 추진 및 청탁금지법 시행 재 강조 /청탁금지법 선물 경조비 수수범위에 대한 권익위 유권해석)

결 재	담 당	처 장
	하두원	김경현

교육구분	정 기	교육일시	2016. 11. 14 (14:00~15:00)		
교육인원	구 분	계	남	여	교육 미참석 사유
	교육대상 인원수	13	12	1	전과교육 - 휴가 : 이계인
	교육 실시 인원수	13	12	1	
교육내용	<b>▣ 연말 대비 공직기강확립 추진 및 청탁금지법 시행 재 강조</b> - 청탁금지법 및 공직기강 확립 - 공직기강 감찰활동(비위 발생시 일벌백계 엄중 처리) - 안전취약분야에 대한 점검 및 예방 강화 등				
	<b>▣ 청탁금지법 선물 경조비 수수범위에 대한 권익위 유권해석</b> <b>【질의내용 및 권익위 유권해석 결과】</b>				
	연번	질의내용	유권해석 결과		
	1	승진·전보시 직무관련자로부터 5만원 이하 화훼류 선물 허용여부	•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또는 동료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 금액을 초과하는 선물, 경조비 수수 가능 • 직무관련자라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·사교의례목적으로 제공하는 허용 금액 범위내의 선물, 경조사비는 수수가능		
2	결혼·장례시 직무관련자로부터 10만원 이하 경조비(축의금, 화환등)허용여부				
3	명절(설, 추석)에 직무관련자로부터 5만원 이하 과일류 선물 허용여부				
▶ 관련근거: 청렴감찰처-16(2016.11.07) / 청렴감찰처-13(2016.11.07.) → • 선물, 경조비 관련 권익위 유권해석 내용 • 선물, 경조사비 관련 관계부처 합동 청탁금지법 TF 해석내용					
교육실시자 및 장소	성 명	직명	교육장소	비 고	
	김상균	처장	안전조사처 사무실		

